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증정 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5. 7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22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7월 4일

제114회(제1차 정례회)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관리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수요를 대처할 수 없어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학교환경 개선을 도모
-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력신장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에 있어 보조기준액을 목적세를 포함한 자치구세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제3항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제17025호)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제)

- 본 조례안은 지원기준을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의 2% 범위내에서 목적세를 포함한 5%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
- 관계법률을 살펴볼때
 - 지방세법에서 자치구의 목적세는 사업소세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제244조에서 “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”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,
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 금액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
-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이에 준하여 목적세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, 본 개정조례안의 (“목적세를 포함한다”)는 (“목적세를 제외한다”)로 현행 규정과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조사한 바 별지와 같이 서울시 평균은 20,956원이고 가장 높은 중구는 178,838원이며, 우리구의 경우 12,636원으로 이를 자치구 평균까지 높이려면 11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2005년도 세입예산 기준으로 볼때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목적세 제외 5% 안을 따를 경우 최대 29억까지 예산편성 가능하고,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금은 52,351원으로 중구, 강남구, 서초구를 제외한 가장 높은 지원구가 될 것임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- 안 제3조에서 자치구세(목적세 포함)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목적세를 제외토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어, 목적세를 제외하고 3%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포함)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(목적세를 제외)의 3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수정함.

5. 審査結果：修正案 可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159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5. 7. 4.

제 출 자 : 김영진 위원

1. 수정이유

교육경비 지원시 지방세법에 목적세를 제외하고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부칙에 시행일을 수정

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포함)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)의 3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함.
-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함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
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

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
치구세(목적세를 포함)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
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비 보조기준액을
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)의 3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

부칙

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

“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
수정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 수정안 |
|---|--|--|
| 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(목적세를 제외한다)의 2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</p> | 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(목적세를 포함)의 5%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| 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(목적세를 제외)의 3%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<u>이 조례는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|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5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5. 6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 이유

-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수요를 대처할 수 없어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학교환경 개선을 도모
-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력신장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에 있어 보조기준액을 목적세를 포함한 자치구세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항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제17025호)

나. 예산조치 :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예정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한다)의 2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| 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자치구세 (목적세를 포함)의 5%범위내에서있다.</p> |